의 안 !	번호	제	호
의	결	2020.	
연 월	일	(제	회)

의 결 사 항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추미애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절차가 좌우됨을 의미하고, 이를 방치할 경우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되어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

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관특혜를 실효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

이에 변호사의 수임·변론 단계부터 법조브로커 퇴출, 사후 감시·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별 개선 방안을 도입하여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한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의 정착을 구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가. 공직퇴임변호사 중「공직자윤리법」상 재산공개대상자와 기관업무기 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수임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연장함(안 제31조제3항)
- 나. 공직퇴임변호사 중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수임자료 등 제출기간을 수임제한 기간 연장에 맞추어 3년으로 연장함(안 제89조의4제1항)

- 다. 조세포탈·수임제한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호·대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,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 선임서 미제출 변호·대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(안 제112조의2제1호, 제117조제1항제3호)
- 라. 공무원·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(안 제1 12조의2제2호)
- 마.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정의규정을 신설함(안 제22조제2항)
- 바.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에 재판·수사기관 외 공정거래위원회·국 세청·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추가하고, 연고관 계 선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(안 제30 조, 제117조제2항제1의2호)
- 사.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·감독 책임을 명시하고, 법조브로커 ·명의대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무법인 등 및 변호사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 (안 제22조제7항, 제115조의2)
- 아. 퇴직공직자 활동내역을 거짓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, 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전년도 업무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함(안 제89조의6제1항, 제117조제1항제2호, 제2항제9호)

- 자.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함(안 제89조의3제5항)
- 차.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협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함(안 제98조 의7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법률 제 호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2항"을 "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사무직원이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, 신고 등의 여부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·봉급,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다.
- ⑦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지도 · 감독할 책임이 있다.

제30조 중 "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"를 "재판기관이나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금융감독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와"로 한다.

제31조제3항 본문 중 "퇴직(재판연구원,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·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)하여"를 "퇴직하여"로, "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"를 "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"로, "국가기관(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

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「검찰청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,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,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)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"을 "국가기관이처리하는 사건을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: 퇴직 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간
- 2.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(제1호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제외한다):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간
-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직퇴임변호사 :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간
- ⑥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 아니한다.
- 1. 재판연구원
- 2. 사법연수생
- 3.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·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
- 4.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 기 간 중에 퇴직한 자

제89조의3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둔다.
- 제89조의4제1항 중 "2년"을 "다음 각 호의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1. 공직자유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: 3년
 - 2. 제1호 외의 공직퇴임변호사 : 2년

제89조의6제1항 중 "매년 1월 말까지"를 "퇴직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"으로, "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"를 "업무내 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"로 한다.

제98조의7 및 제1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98조의7(징계기준 마련)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 유형, 정도,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협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징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- 제112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
 - 2. 제31조제1항제3호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

3. 제37조제1항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

제113조제4호,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5조의2(양벌규정) ① 법무법인·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이 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(제34조제2항,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(제34조제2항,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변호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17조제1항 중 "제89조의4제1항·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"을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

한다.

- 1. 제89조의4제1항·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 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2.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(제57조·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리한 자

제117조제2항제1호의2 중 "제35조"를 "제30조, 제35조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및 수임자료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31조제3항, 제89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퇴직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사무직원) ① (생 략)	제22조(사무직원) ① (현행과 같
	승)
<u><신 설></u>	② 사무직원이란 계약의 명칭이
	나 형식, 신고 등의 여부를 불문
	하고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근
	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
	대가로 임금ㆍ봉급, 그 밖에 어
	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
	경제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한
	<u>다.</u>
<u>②</u> · <u>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	같음)
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	<u>⑤</u>
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	
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	
여 <u>제2항</u> 에 따른 전과(前科) 사	<u>제3항</u>
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	
할 수 있다.	
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	<u>⑥</u> 제5항
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	
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	
회신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⑦ 변호사는 사무직원을 지도・
	감독할 책임이 있다.

제31조(수임제한) ①・② (생 략)

③ 법관, 검사, 장기복무 군법무 관,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(재판연구원,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 인 ·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)하여 변호사 개 업을 한 자(이하 "공직퇴임변호 사"라 한다)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, 검 찰청, 군사법원, 금융위원회, 공 정거래위원회, 경찰관서 등 국 가기관(대법원, 고등법원, 지방 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「검찰청법」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 청, 고등검찰청, 지방검찰청, 지

<u>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에</u>
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정거래위
원회, 국세청, 금융감독원 등 대
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근무
<u>하는 자와</u>
제31조(수임제한) ①・② (현행과
같음)
③
<u>퇴직하여</u>
<u>다음 각 호에서</u>
<u> 정하는 바에 따라</u>
2
<u>국</u> 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
<u> 기기인의 지디어는 시신로</u>

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)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. 다만,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 자가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④·⑤ (생 략)

 - <u> </u>	

- 1.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 : 퇴직 전 3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간
- 2.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(제1호의 재산공개대상 자는 제외한다): 퇴직 전 2년 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간
-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⑤ (생 략)

제89조의4(공직퇴임변호사의 수 제89조의4(공직퇴임변호사의 수 임 자료 등 제출) ① 공직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 와 처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 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⑥ 다음 각 호의 자는 제3항에 따른 공직퇴임변호사로 보지 아 니한다.
- 1. 재판연구원
- 2. 사법연수생
- 3.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 ·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 <u>무한</u> 자
- 4. 제4조제3호에 따른 변호사로 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수 임제한 기간 중에 퇴직한 자
- 제89조의3(윤리협의회의 조직ㆍ 제89조의3(윤리협의회의 조직ㆍ 같음)
 - 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 반행위의 감시를 위하여 윤리협 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 센터를 둔다.
 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 - 임 자료 등 제출) ① ---------- 다음 각 호의 <u>기간</u> -----

<신 설>

<신 설>

② ~ ⑤ (생 략)

제89조의6(법무법인 등에서의 퇴 / 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) ①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에 따 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(이하 이 조에서 "퇴 직공직자"라 한다)가 법무법인 • 법무법인(유한) • 법무조합 또 는 「외국법자문사법」 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(이 하 이 조에서 "법무법인등"이라 한다)에 취업한 때에는, 법무법 인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 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 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,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 성하여 법무법인등의 주사무소 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

1. 8 역사판되집 세10소세1 영예
따른 재산공개대상자 : 3년
2. 제1호 외의 공직퇴임변호사 :
<u> 2년</u>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89조의6(법무법인 등에서의 퇴
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) ①
ਸ਼ੀ ਹੀ
<u>퇴직</u>
공직자의 퇴직일부터 3년 동안
업무내역서를 작
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법무법
인등의 주사무소

1 고지기 0 기버 게10고게1청세

출하여야 한다. ② ~ ⑥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-----.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98조의7(징계기준 마련) 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비위의 유형, 정도,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협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징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.

제112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 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 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
- 2. 제31조제1항제3호(제57조, 제 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

제11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13조(벌칙) ------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29조의2 (제57조, 제58조의16 또는 제5 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한 자
- 5. 제31조제1항제3호(제57조, 제 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)에 따른 사건을 수임한 변 호사
- 6. (생략)
- 7. 제37조제1항(제57조, 제58조 <삭 제>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

호사

3. 제37조제1항(제57조, 제58조 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한 자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6. (현행과 같음)

<u>위반한 자</u> <신 설>

제115조의2(양벌규정) ① 법무법 인 · 법무법인(유한) 또는 법무 조합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 이 그 법무법인, 법무법인(유 한), 법무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제2호(제34조제2항, 제3 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)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 법인, 법무법인(유한), 법무조합 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무법인, 법무법 인(유한), 법무조합이 그 위반행 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 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 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그 변 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09조 제2호(제34조제2항, 제3항을 위 반한 경우에 한한다)에 해당하 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 를 벌하는 외에 그 변호사에게 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

항ㆍ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 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한 거짓 자료를 제출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

<u>다.</u>	다만,	변호	<u> 사가</u>	ユ	위빈	- 행.	위
를	방지ㅎ	}기 <i>-</i>	위하여	भे ह	해당	업-	무
에	관하¢	· 상대	당한	주의	의와	감-	독
<u>을</u>	게을리	하지	아니	한	경우	-에-	느
ユi	러하지	아니	하다	<u>•</u>			

제117조(과태료) ① 제89조의4제1 제11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

- 1. 제89조의4제1항·제2항 및 제8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에 대 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2.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에 대한 거짓 자료 를 제출한 자
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의2 (제57조·제58조의16 또는 제 58조의30의 규정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 정을 위반하여 변호 또는 대 리한 자
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(생략)
- 1의2. 제22조제2항제1호, 제28 조의2, 제29조, <u>제35조</u> 또는 제36조(제57조, 제58조의16 또 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 한 자
- 2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③ • ④ (생 략)

1. (현행과 같음)
1의2
<u>제30조, 제35조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89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
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
<u>한 자</u>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법무과				
연 락 처	(02) 2110 - 3816			